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용혜인 · 서미화 · 서왕진
윤종오 · 황운하 · 한창민
손 술 · 정혜경 · 백혜련
전종덕 · 김재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저성장과 양극화,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을 넘어,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사회투자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현재 본 법에 근거해 설치한 계정은 시행령상 일부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활용될 수 있으나,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.

반면,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(BSC),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.

또한 유엔(UN)은 올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

서 “사회연대경제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기관을 재원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재원의 필수 행위자로 인정”한다면서, 지역적·국가적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이들 기관의 접근성을 촉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정의함(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).

나. 진흥원의 업무 및 사업수행기관의 의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2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27조).

다.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함(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 까지 등).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채무조정”을 “채무조정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(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)”을 “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(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)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(제5호의3가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5의2. “사회연대경제조직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

다.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

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마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

국연합회

바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8조 또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

사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기업
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

5의3. “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사업

나.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사업

다.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또는 출자

라.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2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

제27조제1항 중 “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”을 “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”을 “지원사

업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”을 “지원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”을 “지원사업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”을 “지원사업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2호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한다.

제2장제9절의 제목 “자활지원계정”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한다.

제55조의2의 제목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”을 “지원사업”으로, “자활지원계정”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· 제7호 및 제8호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각각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한다.

제55조의3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각각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”을 “지원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한다.

1의2.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수행

제55조의4제1항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각각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한다.

제55조의5 전단 및 후단 중 “자활지원계정”을 각각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<u>채무조정</u> 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·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채무조정 등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“ <u>사회연대경제조직</u> 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 가. 「 <u>사회적기업 육성법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. 「 <u>협동조합 기본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(異種)협동조합연합회

<신 설>

- 다.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
- 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- 마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
- 바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8조 또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
- 사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기업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
- 5의3. “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- 가.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사업

6. “사업수행기관”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(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)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
7.·8. (생략)

제24조(진흥원의 업무)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나.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사업

다.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또는 출자

라.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6. -----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(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)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(제5호의3가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)-----

-----.

7.·8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진흥원의 업무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

2. ~ 16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제27조(사업수행기관의 의무) ① <u>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</u>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<u>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</u>을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 받은 금전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<u>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</u>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. ③ (생 략) ④ 진흥원이 <u>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</u>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29조(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	<u>업</u> 2. ~ 1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7조(사업수행기관의 의무) ① <u>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</u>-----<u>지원</u> <u>사업을</u>---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지원사업</u>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지원사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29조(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
---	---

운영)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·추진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금융회사, 금융협회,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42조(휴면계정의 용도)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(생략)

2.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
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

3. ~ 5. (생략)

제9절 자활지원계정

제55조의2(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)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

설치한다.

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

8.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

제55조의3(자활지원계정의 용도)
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·3. (생략)

4. 자활지원계정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
5.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·연구

6.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
제55조의4(보증료 등)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

② 사회투자계정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사회투자계정-----

8. -----사회투자계정-----

제55조의3(사회투자계정의 용도)
사회투자계정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수행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사회투자계정-----

5. 지원사업-----
-

6. -----사회투자계정-----

제55조의4(보증료 등) ① -----
--사회투자계정-----

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

제55조의5(준용규정)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, 제51조,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보완계정”은 “자활지원계정”으로 본다.

-----사회투자계정-----

-----.

② -----사회투자계정-----

-----.

제55조의5(준용규정) 사회투자계정-----

-----.